#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64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서명옥・박준태・고동진

배준영 · 서천호 · 백종헌

최보윤 • 이철규 • 김예지

최은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의는 의료기관 내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수련생지위와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이중적 지위로 인해 전공의는 1주일에 최대 80시간, 연속하여 최대 36시간을 수련을 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등 근로자로서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전공의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있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최근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치료하던 전공의가 피해자 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공동으로 4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이 있었음. 이처럼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수련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련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러한 열악한 수련환경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는 수련환경평가 거버

넌스 체계에 있어서도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전공의의처우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의료분쟁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과 의료사고·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대하여 법률지원 등 제공의 의무 및 「근로기준법」 에 부합하는 수련시간 결정 및 휴게시간 등의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의 전공의 대표성 제고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4조의2·제16조의2 신설, 제6조, 제7조 및 제15조 등).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수련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대상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수련병원등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련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휴게,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55조 및 제56조를 따른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련병원등에 대한 고지) 수련병원등의 장 또는 지도전문의

는 해당 병원이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의료기관이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환자의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전공의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 본문 중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전공의의 수련시간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항 단서 중 "8시간"을 "24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6시간"을 "24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40시간"을 "28시간"으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공의의 휴게시간은 수련시간에 산입한다.

제8조제1항 중 "휴가"를 "휴가 등"으로,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를 "제70조,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지도전문의의 의무 등)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에게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의사회"를 "의사회 소속 전공의 대표단체"로, "전공의 대표자"를 "자"로 한다.

- 8.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에 관한 사항
- 9.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의료분쟁·의료사고 예방조치 및 대응 등 에 관한 사항
- 10. 수런병원등의 제4조제5항, 제7조 및 제8조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위원회는 제3항제3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실태조사)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8호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의 지원) ① (생 략)	제3조(국가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	2
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u>할 수 있다</u> . 이	<u>하여야 한다</u>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	
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런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수런병원등의 장과 전공의	제4조(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
의 책무 등) ①・② (생 략)	의 책무 등) ①·② (현행과 같
	으 )
<u>&lt;신 설&gt;</u>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의료
	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
	정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사
	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
	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수
	련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u> &lt;신 설&gt;</u>	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의료사
	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신 설>

<신 설>

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 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따라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대 상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 등 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련병원등의 장은 「근로 기준법」에 준하는 수련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 다. 다만, 휴게, 휴일, 연장·야 간 및 휴일 근로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 구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55조 및 제56조를 따른다.

제4조의2(수련병원등에 대한 고 지) 수련병원등의 장 또는 지 도전문의는 해당 병원이 전공 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 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 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 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공 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 상에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 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 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 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 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 능하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 에게 연속하여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렁으로 정 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 이내의 범위 에서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 다.

③ (생 략)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전 공의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 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 제7조(수련시간 등) ① -----

2	
	24시간
	28시간
	·- <b>.</b>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제8조(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 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u>휴가</u>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u>제74조제1항부</u> <u>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u>.

② (생 략)

<신 설>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7. (생략)

<신 설>

<신 설>

	④ 전공의의 휴게시간은 수런
	시간에 산입한다.
제	8조(임산부의 보호) ①
	<u>휴가 등</u>
	<u>제70</u> 조, 제74
	조 및 제74조의2를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제	12조의4(지도전문의의 의무 등)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
	에게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 역량 강화
	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
	여야 한다.
제	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1. ~ 7. (현행과 같음)
	8.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에
	관한 사항
	9.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의료
	분쟁・의료사고 예방조치 및
	대응 등에 관한 사항

8. (생략)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호선한다.
- 1. · 2. (생략)
- 3.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u>의사회</u>에서 추천하는 <u>전</u> <u>공의 대표자</u>
- 4. ~ 6. (생 략)
- ④ ~ ⑥ (생 략)

<신 설>

10. 수런병원등의 제4조제5항,
제7조 및 제8조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u>11.</u> (종전의 제8호와 같음)
2
<u>다만, 위원회는 제3항</u>
제3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③
1. • 2. (현행과 같음)
3
의사회 소속 전공의 대
<u> 표단체</u> <u>자</u>
4. ~ 6.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실태조사) 위원회는 제
15조제1항제8호의 사항을 파악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